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22. 8. 17.
개정 2023. 2. 17.
개정 2025. 2. 1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방법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소속 찾아가는생활체육지도자운영팀장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말한다.〈개정 2025. 2. 18.〉
2. "찾아가는생활체육지도자운영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 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자를 장애인체육 현장에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2. 18.〉
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근무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제 2 장 인 사

제 4 조(정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본회 직제 및 정원규정 별표 2의 무기계약직 정원 이내로 한다.

제 5 조(채용) 무기계약근로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며, 채용방법 및 채용결격사유 등 채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6 조(근로계약) ① 회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계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서식에 따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업무, 휴직 대체를 위해 팀장 및 지도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팀장 및 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 상한연령(만60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연1회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팀장과 지도자를 구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8 조(휴직, 복직 등)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 복직, 정년, 퇴직, 근로계약의 해지, 해고의 예고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 9 조(담당업무) 팀장 및 지도자의 담당업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0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40시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출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활체육정보센터에 관련 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여비는 본회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① 회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및 교육에 필수 참가하여 역량강화 및 개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 미수료자에 대해서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무기계약근로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4조(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파견) 정부에서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 관련 근무 및 수당 등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준수의무) 무기계약근로자의 준수의무는 본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6조(손해배상)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생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관리) ① 무기계약근로자 복무 관련 세부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② 휴일, 휴가(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본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임산부의 보호 등) 임신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보수 등

제19조(급여의 결정)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는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별표와 같다.

제20조(급여지급일)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지급일, 급여 계산기간, 지급 방법, 공제, 연장 수당 등은 본회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퇴직급여) 1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회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사유, 징계절차, 범죄고발 등은 본회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회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24조(성희롱 · 성폭력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희롱 · 성폭력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회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다.

제25조(준용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생활체육지도자운영팀장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22.　8.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2021년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임용(팀장 및 지도자)된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본다.

부　　칙(2023.　2.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2. 1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개정 2023. 2. 17, 2025. 2. 18.〉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기준표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정액급식비	-	본회 보수규정 준용	
근속수당	3년 ~ 20년 이상	30,000원 ~ 200,000원 (연차별 증액)	
명절휴가비	-	본회 보수규정 준용	
자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적용	

* 근속수당 : 본회 근무경력 100% 인정